#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413

발의연월일 : 2023. 7. 24.

발 의 자: 강병원·홍정민·유정주

송재호・오영환・고영인

정일영 · 강민정 · 임호선

이동주 • 이해식 • 권칠승

김영주 · 김교흥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도록 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홍수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마련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기후 위기 등의 환경변화, 과거 피해사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그 내 용을 변경·조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 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작성 · 운용"을 "작성 · 준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 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 항(종전의 제2항) 중 "작성 및 운용기준"을 "작성 및 준수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를 "위기관리 매뉴얼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을 변경·조정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와 변경·조정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를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로, "작성 · 운용"을 "작성 · 준 수"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전단 중 "매뉴얼의 작성 • 운용"을 "매뉴얼의 작성·준수"로, "정기적으로"를 "반기별로"로, "필 요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재난유형별 재난 관리 체계
- 2. 위기관리 기본 방향
- 3. 기후 위기 등 환경적 변화
- 4. 인구ㆍ지리적 특성
- 5. 과거 피해사례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
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	뉴얼 작성·운용) ①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	
기관리 매뉴얼을 <u>작성·운용</u> 하	<u>작성 • 준수</u>
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	
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u>야 한다.</u>
	1. 재난유형별 재난 관리 체계
	2. 위기관리 기본 방향
	3. 기후 위기 등 환경적 변화
	<u>4. 인구·지리적 특성</u>
	<u>5. 과거 피해사례</u>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사항</u>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	<u>③</u>
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u>작성 및</u>	<u>작성 및</u>

<u>운용기준</u>을 정하여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 다.

### ③ (생 략)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⑤ ~ ⑦ (생 략)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생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u> </u>
<u>.</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5
의기관리 매뉴얼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을 변경
•조정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와
변경・조정한 사항을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⑥</u> ~ <u>⑧</u>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9
ᆌᄼᅕᆝᆸᄇᇊᆝᅠᆌᄋᅕᆝ
<u>제4항부터 제8항</u>
까지의
<u>작성·준수</u>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u> </u>
- <u>매뉴얼의 작성·준수</u>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 뉴얼을 작성·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u>반기별로</u>	- <u>필</u>
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